##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(약칭: 국세지방세조정법)



[시행 2014. 1. 14.] [법률 제12226호, 2014. 1. 14., 일부개정]

기획재정부 (조세법령운용팀) 044-215-4151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국세(國稅)와 지방세(地方稅)의 조정(調整)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4. 1. 14.]

제2조(국세)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국세를 과세(課稅)한다.

- 1. 소득세
- 2. 법인세
- 3. 상속세와 증여세
- 4. 종합부동산세
- 5. 부가가치세
- 6. 개별소비세
- 7. 교통 에너지 환경세
- 8. 주세(酒稅)
- 9. 인지세(印紙稅)
- 10. 증권거래세
- 11. 교육세
- 12. 농어촌특별세
- 13. 재평가세
- 14. 관세
- 15. 임시수입부가세

[전문개정 2014. 1. 14.]

제3조(지방세)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세를 과세한다.

- 1. 보통세
  - 가. 취득세
  - 나. 등록면허세
  - 다. 레저세
  - 라. 담배소비세
  - 마. 지방소비세
  - 바. 주민세
  - 사. 지방소득세
  - 아. 재산세
  - 자. 자동차세
- 2. 목적세
  - 가. 지역자원시설세
  - 나. 지방교육세

[전문개정 2014. 1. 14.]

**제4조(중복과세의 금지)**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(課稅物件)이 중복되는 어떠한 명목의 세법(稅法)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.

[전문개정 2014. 1. 14.]

제5조(국세의 지방양여) ① 삭제 <2004. 1. 16.>

② 삭제<2004. 12. 30.> [본조신설 1990. 12. 31.]

부칙 <제12226호,2014. 1. 14.>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